##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9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박선원·조 국·박지원

이인영 • 이수진 • 조정식

박민규 • 이기헌 • 전재수

강준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 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 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 제5호의2 신설).

- 나.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 기 및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직무의 집행을 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 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집·분석하기"를 "수집·분석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를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를 "오로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 위

⑦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직) ① (생 략)	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②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	
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u>수집·분석하기</u> 위	<u>수집 ·</u> 분석해서는
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u>아니 되며 이를</u>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생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	2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u>주는 행위</u>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6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에	<u>제5호까지 및 제5</u>
해당하는 행위	호의2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 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 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u>내</u> 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 ⑥ (생 략) <신 설>

3
<u>J</u>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u>.</u>
④ <u>오로지</u>

- ⑤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따른다.